

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8. 28 (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6. 9. 25(월)

다. 상정일자 : 2006. 9. 27(수) 제13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9.27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환경복지과장 지형근)

가. 제안이유

- 하수도사용 조례 제정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의 징수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공공 하수도의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의 세입항목에 다음 호를 신설함(안 제2조제1항)
 - 5.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수입금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가.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유지관리 비용에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

나. 검토결과

- 제안문 중 주요골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표현하고

말미에 소괄호내에 그 근거조항을 표기하여야 하나 근거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

○ 기타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제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

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8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- 하수도 사용조례 신설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가부담금등의 징수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제1항의 세입항목에 다음 조항을 추가 신설함
 -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원인가부담금등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수입금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입법예고 : 실시(6.16 ~ 7. 6)결과, 의견 제출사항 없음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라.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
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”를 “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”을 「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5호중 “제4호의 규정”을 “제5호의 규정”으로 하여 동호를 제6호로 하고,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「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」에 의한 수입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<u>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 관한 법률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 하는데 필요한 평창군수질개선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세입 및 세출)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 제1호 내지 <u>제4호의</u>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p>	<p>제명 <u>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세입 및 세출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등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수입금</u></p> <p>6. ----- <u>제5호의</u> 규정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

제16조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등) ①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 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 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·운영한다.